吏讀의 개념과 성격*

서종학**

要約

이 글은 吏讀의 개념과 관련된 文獻資料와 硏究史를 분석하고 검토함으로써 이두의 개념과 성격을 재정립하는 데 목적을 둔다.

문헌자료를 검토해 보면 '이두'란 술어는 '표기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史料들이 대부분이란 사실 그리고 조선 후기의 사료에서 형태부 표기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硏究史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견해가 '이두'를 '표기법'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두, 향찰, 구결'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는 것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래서 표기법을 뜻하는 '이두'를 상위 개념에 두고 그 하위에 '향찰, 이찰, 구결'을 두자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 좋을 것 같다. '이두'를 표기 대상으로 파악할 경우, '이두문, 이두어, 이두토, 이두자'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핵심어 : 이두(吏讀), 향찰(鄕札), 이찰(吏札), 구결(口訣), 표기 대상, 표기법, 연구사

* 이 글은 2011년 2월 9일~10일에 있었던 제41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크게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 영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 序言

이 글은 吏讀의 개념에 대한 여러 文獻資料와 諸家의 學說을 되돌아보고, 이를 통해 이두의 개념과 성격을 재조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均如傳』에 '鄕札'이란 용어가 사용되었고 『帝王韻紀』에 '吏書'란 용어가 사용된 이래, 소위 차자표기법과 관련하여 '吏讀, 吏道, 吏札' 등과 '口訣'이란 용어들이 이 용어들과 함께 자주 등장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두'란 단어를 쉽게 또는 조심스럽게 사용해 왔다. 그러나 차자표기법의 하나인 향찰과 구결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이두와 향찰과 구결이 표기법의 차원인지 표기된 자료의 차원인지 등에 대한 의문을 늘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두'의 개념이나 성격에 대한 이런 의구심은 역사적인 데서도 발견되는데, 이를 안병희(1987)에서 이미 논한 바 있다. 안병희(1987: 7-8)에서 '吏讀'가 여러 개념으로 사용된 경우를 보여 준다.[1] 소위 이두학습서의 이두는 '吏文에 토를 표기한 것'에 해당하고, 이문을 이두라 하기도 하며, 조선 초기에는 이두가 쓰인 글을 이문과 구별하여 이두라 하였고, 심지어는 이두가 쓰인 문서의 글을 이문이라 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吏讀가 무엇인지 그 개념과 성격을 다시 考究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첫째, '이두'란 용어 자체의 개념 정립에 다소 혼란이 있는 듯하니, 이 용어의 표기 대상이 어휘부인가 형태부인가 아니면 문장인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용어는 표기된 결과를 말하는가 아니면 표기 원리나 표기법을 가리키는가를 밝히는 것이다.[2] 셋째, '이두'와 '향찰', '구결'이

1) 안병희(1987)의 'I. 이두의 학습서'는 1983년 동경에서 개최된 제1차 한국학 국제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안병희(1986), 이두의 학습서에 대하여, 제1차 KOREA학 국제세미나논문집,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에 실린 것을 전재한 것이다.

2) '표기 원리' 또는 '표기법'을 앞으로는 '표기법'으로 부르기로 한다.

가지는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향찰과 이두, 구결 자료를 한자차용표기자료로 묶어서 이해하였다. 여기에서도 편의상 차자표기자료로 묶어서 논하되 주제에 맞추어 '이두'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그리고 이를 한자차용원리, 표기의 성격, 표기 대상(또는 범위)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자차용원리 면에서 보면, 향찰, 이두, 구결은 모두 동일한 원리로 한자를 차용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訓主音從 등의 원리인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자차용원리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다. 표기의 성격 면에서 보면, 이러한 용어들이 표기 원리 또는 표기법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표기된 결과물을 가리키는가하는 것이다. 표기 대상의 면에서 보면, 문장 표기에 사용되는 것인지 形態部 표기에 사용되는 것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표기 대상과 관련하여 문장 단위의 표기와 형태부 단위의 표기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전자는 문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후자는 助詞, 語尾, 일부 實辭를 가리키는 것이다.[3] 이와 비슷한 논의로 이승재(1992: 14)와 박성종(1996: 7)이 있다. 여기에서는 어휘 표기와 문장 표기로 나누고, 전자는 고유명사를 비롯한 국어의 실사를 적은 것이고 후자는 실사를 포함하여 조사와 어미 등을 포함하여 적은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방법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하나는 吏讀에 관한 史料를 정리하고 분석한 후 전후 문맥상으로 그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諸家의 견해를 통하여 이두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다.

吏文은 중국과 주고받는 외교문서에 쓰인 문체를 가리킨다. 외교문서는 원래 순수한 한문으로 쓰는 것이지만 吏文으로 쓰기도 한다. 이문은 한문을 골격으로 하되, 중국의 속어 및 특수한 용어 등을 섞어 쓴 공문서식을 가리킨다. 따라서 공문서 및 행정상 특수하게 쓰이는 용어

3) 이 글에서는 앞으로 '助詞, 語尾, 일부 實辭'를 '形態部'로 줄여서 부르기로 한다.

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吏讀라 할 수 없다.(안병희1988, 박성종1996: 11, 정광2006) 그러나 국내문서에 이문이 사용된 경우가 있다. 한문은 다시 순수한 한문과 이문으로 나누어지는데 안병희(1987: 7-8)에 의하면 국내문서에서도 이문은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때의 이문은 행정과 법률의 전문용어가 나타나고 독특한 문체를 갖는 점이 특징이라 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文科 또는 승음출신자를 봉할 때 모두 吏文을 쓰고 동서반 5품 이하에는 吏讀를 사용하는데 吏讀는 비리하기 때문에 5품 이하에도 吏文을 쓰게 해 달라'는 기록이다.[4] 장세경(2001: 428)에서 吏文을 '咨文, 書契, 關子, 甘結, 報狀, 題辭 등 특수한 관용문서에 사용되는 특별한 서체'로 정의한 것은 이러한 흐름으로 이해된다.

홍기문(1957: 54)은 '이문'을 '이찰'과 구별하여 '근세 중국의 관청용 특수 용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 관청의 특수 용어'란 점에 의견을 같이 하여 이문의 기원을 밝히고 이를 이두와 관련지은 연구로는 정광(2006)이 있다. 정광(2006)에서는 중국 원나라의 漢吏文이 고려에 들어왔는데, 조선조에서는 이문이 학습되었고 과거시험 과목이 되었다고 하였다.[5]

2. 文獻資料에 나타난 吏讀의 개념과 성격

역사 이래 고려시대까지의 史料 중에서, 이두(또는 차자 표기 자료)와 관련되어 현재까지 남아 있는 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6] 여기에서

4) 吏曹啓 吏科及承蔭出身 封贈爵牒等項文牒 皆用吏文 獨於東西班五品以下告身 襲用吏讀 甚爲鄙俚 請自今用吏文 從之"(世祖實錄 3년7월)
'吏讀를 吏文으로 바꾸어 쓴다.'는 기록은 이미 최만리 상소문(世宗實錄: 103)에 나타난다. (5ㄴ) 참조.

5) 吏讀는 吏文과 관계를 가지지만 이 글에서는 이문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하지 않는다.

사용된 명칭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鄕札'과 '吏書'이다. 전자는 1075년에 간행된 『均如傳』의 崔行歸 序文(967년)에 실려 있고, 후자는 1289년에 간행된 李承休의 『帝王韻紀』 下卷에 실려 있다.

1. ㄱ) 하물며 唐文은 제석의 그물이 잘 짜인 것과 같아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쉽게 읽지만, 鄕札은 梵書를 잇달아 펼친 것과 같아서 중국인은 알기 어렵다. 矧復唐文如帝網交羅 我邦易讀 鄕札似梵書連布 彼土難諳(均如傳: 8, 최행귀 서문, 밑줄은 필자, 이하 동일함)
 ㄴ) 설 한림이 斯文을 억지로 바꾸어 번거롭게도 쥐꼬리만 이룬 탓이 아닐까? 薛翰林强變於斯文 煩成鼠尾之所致者歟(均如傳: 8, 최행귀 서문)

(1ㄱ)에서 보면, '鄕札'을 '唐文'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고, 또 '향찰은 梵書를 連布한 것 같다'는 말의 '연포'라는 단어는 문장 표기를 의식한 記述로 보이므로, '향찰'은 형태부 표기가 아닌 문장의 표기를 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1ㄴ)에서 薛聰이 '斯文을 억지로 바꾸려 했다'의 '斯文[한문]'도 문장이나 글을 뜻하는 말이므로 '鄕札'을 문장을 표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7]

6) 다음에 들 자료 외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다음 자료도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인용되기도 하였다.
- 薛聰字聰智 … 以方言讀九經 訓導後生 至今學者宗之(三國史記 46, 列傳 第6 설총조)
- 聰生而叡敏 博通經史 新羅十賢中一也 以方音 通會華夷方俗物名 訓解六經文學 至今海東業明經者 傳受不絶(三國遺事 4, 義解 第5 원효불기)

7) 하지만 (1ㄱ)의 '帝網交羅'나 '梵書連布'와 같은 구절을 보면 향찰을 표기법의 차원으로 파악했을 가능성도 있다. 표기의 대상은 문장이지만 문장은 표기법에 따라 표기되는 것이다. 한편, 쥐꼬리만 이루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는 사문에 형태부를 덧붙인 것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다.

2. 홍유 설후가 吏書를 만들어서 세속말과 우리말이 법조문과 실무문서를 통하게 하였다. 弘儒薛侯製吏書 俗言鄕語 通科隷(帝王韻紀: 下, 1289)[8]

(2)에서 '俗言鄕語'가 '법조문과 실무문서를 통하게 하였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법조문과 실무문서를 吏書로 작성하였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이미 작성되어 있는 법조문과 실무문서에 吏書로 된 세속말과 우리말을 넣음으로써 그 뜻을 통하게 하였다는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吏書'는 형태부를 표기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1)의 '鄕札'은 문장 표기를 가리키는 것이고 (2)의 '吏書'는 형태부 표기를 가리키는 것이 되어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의 원문 해석이 더욱 분명해진 뒤에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

조선조에 들어서 이두와 관련된 명칭 또는 자료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1395년에 간행된 『大明律直解』의 金祗의 발문에 나오는 '吏道'인데 (3ㄱ)이 그것이다.

3. 설총이 방언문자를 지은바 이를 '吏道'라 하는데 … 마땅히 이 책을 '吏道'로 읽어 천부의 능력으로써 인도하는 것이 옳겠다. 況我本朝三韓時 薛聰所製方言文字 謂之吏道 … 宜將是書 讀之以吏道 導之以良能(大明律直解: 跋 1395)

(3)에서 '방언문자'를 '吏道'라 한다 하였으니, '방언문자'는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는 '표기법'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8) '俗言鄕語通科隷'에 대한 해석은 안병희(2001ㄱ: 11-12)를 참조하였다. 남풍현(2001)에서는 '황패강(1975), 신라향가연구, 국문학논집7·8집, 단국대.'의 견해를 들어 "우리말(俗言과 鄕語)이 과두문자(蝌蚪文字)와 예서(隷書)에 통하게 되었다."로 해석하여 '유학에 통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라 하였다.

뒤의 '이 책을 吏道로 읽는다'는 말은 형태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범위까지 의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추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朝鮮經國典』 서문의 "大明律譯以方言"을 들 수 있다. 즉, 방언으로 대명률을 번역하였다고 한 방언이 (3)의 방언문자일 것이고 그것이 '吏道'이며 따라서 '吏道'는 문장의 표기에 이용된 표기법을 뜻하는 것이다.[9] '吏道'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자료로 1425년(세종 7년)의 『경상도지리지』에 나오는 "作俚文傳於世"를 들 수 있다. 설총이 육경에 통달하고 '俚文'을 지어 세상에 전하였다는 내용인데, 이 '俚文'이 위의 '방언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음 (4)는 『세종실록』에 나오는 기록들로서 '吏讀'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4. ㄱ) 吏讀로 된 『元六典』은 태조 때에 이미 이룩된 법전이며 …,
吏讀元六典 太祖時已成之典 …(世宗實錄 13년, 1431)
ㄴ) 경서에 통달하면 吏讀문자는 가외의 일이오니, 奏本에다 병용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 通聖經則吏讀文字 餘事耳 竝錄奏本 似爲未便(세종실록 15, 1433)

(4ㄱ)의 '법전인 『元六典』이 吏讀로 되었다'는 내용에서 '이두'는 문장 표기에 해당하는 것임은 물론 문장을 표기하는 원리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두문자'란 용어를 사용한 (4ㄴ)의 경우, '竝錄'은 주본과 함께 싣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역시 吏讀가 문장 표기에 사용되었다고 생각한다.[10]

9) '吏道'란 명칭은 세종조에도 사용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기록은 중국의 것이므로 우리 논의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능히 재주와 지례로 이도(吏道)를 부드럽게 꾸며 나갔으나 …能以才智潤飾吏道(세종실록 23년, 1441년)

10) 다음 자료도 참고할 만하다. 그러나 (ㄱ) '漢吏之文'의 '吏'와 (ㄴ) '吏文'이 무얼 뜻하는지 밝힌 후 참고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세종실록』의 최만리 상소문(5ㄱ-ㄴ)과 이에 답한 세종의 언급(5ㄷ)과 또 이에 대한 최만리의 답변(5ㄹ)에서 나오는 1444년의 기록이다.

5. ㄱ) 신라 설총의 吏讀는 비록 비리한 것이라지만 모두 중국에서 통행되는 글자이고 어조에 시행하는 것이어서 문자에서 서로 멀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로 비록 서리나 복예의 무리에 이르러도 반드시 이것을 익히니, 먼저 책 몇 권을 읽고 대강 문자를 알고 그 후에 吏讀를 씁니다. 吏讀를 쓰는 사람은 모름지기 문자에 의지하여서 능히 그 뜻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吏讀로 인하여 문자를 알게 되는 사람이 파다하니 이 또한 학문을 흥기시키는 일조가 됩니다. 新羅薛聰吏讀 雖爲鄙俚 然皆中國通行之字 施於語助 與文字元不相離 故雖至胥吏僕隷之徒 必欲習之 先讀數書 粗知文字 然後乃用吏讀 吏讀者須憑文字 乃能達意 故因吏讀而知文字者頗多 亦興學之一助也(世宗實錄: 103 최만리 상소문)

ㄴ) 하물며 吏讀가 행용된 지 수천 년에 簿書期會 등의 일에 방해됨이 없는데 어찌 구행무폐의 문을 고치려 합니까 … 吏讀가 비록 문자에 불외한다 하여도 유식한 이들은 이를 비리한 것이라고 吏文으로 이를 바꾸어 쓰고자 하였습니다. 而況吏讀行之數千年 而簿書期會等事 無有防礙者 何用改舊行無弊之文 … 前此 吏讀雖不外於文字 有識者尙且鄙之思欲以吏文易之(世宗實錄: 103 최만리 상소문)

ㄱ) 그러나 율문(律文)이란 것이 漢文과 吏讀로 복잡하게 쓰여 있어서 비록 문신(文臣)이라 하더라도 모두 알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율을 배우는 생도이겠는가? 而律文雜以漢吏之文 雖文臣 難以悉知 況律學生徒乎(세종실록 8년, 1426)

ㄴ) 출신이 역과(譯科)로서 吏文을 解得하므로 事大文書를 맡아, 임금의 아는 바가 되어 여러 번 발탁되었다. 聽出身譯科 以解吏文 掌事大文書 爲上所知 累加拔擢(세종실록 32년, 1450)

ㄷ) 설총의 吏讀도 역시 異音이 아니냐? 薛聰吏讀 亦非異音乎 (세종실록: 103 세종의 질문)

ㄹ) 설총의 吏讀는 비록 이음이라고 하나 음에 의지하고 석에 의지하여 어조와 문자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지만 지금 이 언문은 … 薛聰吏讀 雖曰異音 然依音依釋 語助文字 元不相離 今此諺文 …(세종실록: 103 최만리의 답변)

(5ㄱ)에서 '吏讀는 중국에서 통행하는 글자이고 語助에 시행되는 것'이란 언급에 주목한다. '중국에서 통행하는 글자'라는 데서 吏讀를 문자(즉 한자)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파악한 듯하고 '어조에 시행되는 것'이라는 데서 吏讀를 형태부 표기의 수단으로 파악한 듯하다. 이런 태도는 그 뒤의 '먼저 책 수 권을 읽어 문자를 대강 알고 그 후에 이두를 쓴다'는 내용, '문자에 의지한다'는 내용, '이두로 인하여 문자를 알게 되는 사람이 파다하다'는 내용 등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상소문인 (5ㄴ)에서는 그 사정이 좀 다른 듯하다. '수 천 년 사용된 吏讀는 부서기회 등의 일에 방해되지 않았다'고 한 '簿書期會'는 문장이나 문서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다음의 '舊行無弊之文'과 '吏文'이란 문구에서도 그렇게 파악된다. (5ㄷ-ㄹ)의 '異音'이나 '語助'란 단어로 보면 吏讀는 문장을 표기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형태부를 표기하는 수단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다. '문자에서 서로 멀게 다른 것이 아님'과 '문자에 불외함'과 '音에 의지하고 釋에 의지함'이란 내용을 보면 이두는 '표기법'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이두'란 용어는 (5)에서 이미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6. 신라 설총이 처음으로 吏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관부와 민간에 행하나 그 글자를 빌려서 씀이 혹 꺽꺽하고 혹 막히어서 비단 비루하

고 무계할 따름이다. 昔新羅薛聰 始作吏讀 官府民間 至今行之 然皆假字而用 或澁或窒 非但鄙陋無稽而已(訓民正音解例本: 鄭麟趾서문)

(6)은 (5)와 같은 시기인 1446년에 간행된 『훈민정음』 해례본 정인지 서문의 일부인데 여기에도 '吏讀'란 명칭이 등장한다. (6)에서 '이두를 만들었다'고 할 때 만든 대상은 문장이나 형태부는 아닐 것이며 그렇다면 만든 대상은 '표기법'일 것이다. 또 '지금도 행한다'는 것도 행하는 대상은 '표기법'일 가능성이 크다. '꺽꺽하고 막히어서 비루하고 무계하다'고 한 것도 '표기법'인 이두를 사용한 문장이나 형태부가 그러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7. ㄱ) 吏科와 承蔭出身의 爵牒을 封하거나 贈職하는 따위의 文牒에는 모두 吏文을 사용하는데, 오로지 東班·西班 5품 이하의 告身에서만 吏讀를 옛날 그대로 사용하니, 심히 비루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吏文을 사용하소서. 吏曹啓 吏科及承蔭出身 封贈爵牒等項文牒 皆用吏文 獨於東西班五品以下告身 襲用吏讀 甚爲鄙俚 請自今用吏文 從之"(世祖實錄 3년 1457, 7월)
 ㄴ) 방언으로 구경의 뜻을 해석하고 후생을 훈도했다. 또 俚語로 吏札을 만들어 관부에 행하였다. 以方言解九經義訓導後生 又俚語製吏札 行於官府(東國輿地勝覽: 21, 1481)
 ㄷ) 전번에 승지(承旨)가 되었을 때에, 吏讀로 傳旨를 쓰게 하여도 쓰지 못하였는데, … (연산군일기 1년, 1495) 曩爲承旨 用吏讀爲傳旨 尙未能爲 況詔獄之任乎(燕山君日記 1年, 1495)

(7ㄱ)의 '吏讀 대신 吏文을 사용한다'는 문맥에서 이두를 이문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두와 이문의 차이는 무엇일까? 모두 한자를 사용하여 문장을 표기하는 것이 동일하므로 그 차이는 표기법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吏讀'란 용어는 표기법의 개념으로 파

악한 것으로 보인다. (7ㄴ)은 1481년에 간행된 『東國輿地勝覽』의 기록이다.[11] '俚語'로 '吏札'을 만들었다고 하였는데, '俚語'는 '우리말'로 이해되므로 우리말을 표기하는 수단으로 '吏札'이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다 '관부에서 행한다'는 구절을 결부시키면 '吏札'은 표기법을 뜻하는 명칭이라 할 것이다. (7ㄷ)의 '吏讀로 傳旨를 씀'에서 '傳旨'를 쓰는 도구가 '이두'인데 이때에도 '이두'는 표기법으로 이해해야 그 뜻이 통할 수 있을 것이다.[12]

16세기에 들어서 보이는 史料는 다음과 같다.[13]

8. ㄱ) 육조·의금부 및 各司에서 아뢰는 公事에 이 뒤로는 吏讀를 쓰

11) 이 기록은 1530년에 수보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것인데 원간본을 그대로 전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연도를 올려 잡는다.(안병희2001ㄱ: 11 참조)

12) 기타 15세기의 사료로 다음을 더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ㄴ)의 이두는 문장 표기 내지는 표기법으로 해석될 것으로 보인다.

(ㄱ) 다만 설총이 비로소 吏讀를 만들었고, 최치원이 비로소 文章으로 세상에 알려졌으며 …, 但薛聰始作吏讀, 崔致遠始以文章著(成宗實錄 16년 1485)

(ㄴ) 조씨는 광평 대군의 家婢로서 젊어서 궁에 들어갔는데, 문자를 이해하고 이두를 잘 하였다. 曺氏, 廣平大君家婢, 少入宮, 解文字, 善吏讀(성종실록 23년, 1492)

13) 다음 기록의 문맥으로는 '吏讀'가 어떤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ㄷ)의 '吏'가 번역처럼 '吏道'인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ㄱ) 공사를 아뢰는 데에 吏讀를 쓰지 말라.'고 이미 성명이 계셨는데, … 해가 오래된 문서는 이두를 고치지 말라. 入啓公事 不用吏讀 亦有成命 而年久文書 勢難盡改 敢稟 傳曰造牌篆文 當用通行二字, 年久文書勿改吏讀(연산군일기 11년, 1505)

(ㄴ) 설총이 지은 바 이두로 축조 번역하여 이름을 직해대명률이라 했다. 以薛聰所製吏讀 逐條飜譯名曰直解大明律(稗官雜記: 4, 16세기 후반)

(ㄷ) 경은 도량이 크고 才識이 뛰어나서, 文으로 吏道를 닦는 것은 漢儒처럼 이름이 盛하고, 武로 오랑캐를 물리친 것은 趙將의 위세가 드러난 것에 부합하여… 卿襟度宏恢 才識超遠 文以飭吏 蔚漢儒之名孚 武以却戎 允趙將之威著(中宗實錄 18년, 1523년)

지 말라. 六曹義禁府及各司所啓公事 今後勿用吏讀(燕山君日記 10년, 1504)

ㄴ) 신은 본래 학술이 없고 다만 吏讀를 알 뿐이니… 臣本無學術 只解吏讀而已(中宗實錄 4年, 1509)

ㄷ) 上項 諸畜의 염역치료방문을 吏讀와 諺文 양쪽으로 해석한다. 上項諸畜染疫治療方文乙 吏讀諺文爲等如 兩件解釋(中宗實錄 36년, 1541)

ㄹ) 이번에 지어 올린 글을 보니 吏讀를 쓰고 있는 것이 평시의 傳敎와 같으니 이는 史體로 보아 중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見此製進之文 則用入吏讀 如常時傳旨 無乃事體不重乎(宣祖實錄10年, 1577)

ㅁ) 유성룡이 아뢰기를 "우리나라 吏刀는 薛聰이 창제한 것이라 하는데,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하고, 헌국이 아뢰기를, "이두가 있었던 까닭에 아전들이 모두 문장을 해석합니다. 만일 이것이 없었다면 알기 어려웠을 것입니다."라 하였다. 成龍曰 我國吏刀薛聰所創云 未知其義矣 憲國曰 有吏刀故吏胥皆解文若無此難以解矣(선조실록 30년 1597)

(8ㄱ)의 '勿用吏讀'에서는 '이두'가 어떤 개념으로 사용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공사 문서에 이두를 쓰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표기법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8ㄴ)의 '학술이 없고 이두를 안다'는 것에서 '학술'은 경서의 사상이나 철학을 의미하는 것일 터인데 이에 대응되는 '이두'는 사상이나 철학보다는 실용적인 무엇이 될 것이다. 그 무엇이 무엇일지 분명하지 않지만 이두를 읽고 쓸 줄 안다는 것은 표기하는 원리 즉, 표기법을 안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8ㄷ)은 1541년의 『중종실록』에 있는 자료인데, '이두와 언문 양쪽으로 해석하다'에서 吏讀를 언문과 동등하게 그리고 대당되는 개념으로 다루고 있으니 吏讀를 문장의 차원 또는 문장을 표기하는 원리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문'이 한글을 도구로 하여 우리말을 표기하는 한 방법이라 한다면 '이두'는 한자를 도구로 하여 우리말을 표기하는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8)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8ㄹ)인데, 여기에 사용된 '傳敎'와 '史體'라는 용어에서 유추하자면 吏讀가 문체 또는 표기의 원리라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吏刀'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8ㅁ)의 '解文'을 '문장을 해석하다'로 번역한 것은 온당하다고 할 것이다. '吏刀가 있었으므로 아전들이 문장을 해석한다'는 말에서 '이도'는 문장을 표기한 표기법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14] 이두의 개념을 형태부의 표기나 문장의 표기로 국한하여 표기의 대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9. 이 교서는 사인이 있는 곳에 曉諭하도록 하라. 또 吏讀를 넣고 지리한 말은 빼어 버려 조정의 榜文처럼 만들고, 또한 의병장이나 감사 등에게 諺文으로 번역하게 하여 村民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의논하여 아뢰라. 此敎書則士人處曉諭 又入吏讀 去其支辭 多作朝廷榜文 又令義兵將或監司等 飜以諺書 使村民皆得以知之 事議啓(宣祖實錄 25年, 1592)

(9)의 '교서에 지리한 말은 빼고 이두를 넣어 榜文처럼 만들라'는 말에서 '교서에 이두를 넣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그리고 '조정의 방문처럼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교서에 이두를 넣는다'는 말에서 '이두'는 형태부를 표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방문처럼 만든다'라든가 뒤의 '언문으로 번역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9)의 '이두'는 형태부를 표기하는 문체, 즉 표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17세기에 들면서도 吏讀와 관련된 史料는 계속된다.

14) 조선왕조실록에서 吏讀는 모두 20번 나타나지만 吏刀는 이 곳 한 군데에만 나타난다.

10. ㄱ) 吏讀가 함께 적혀 있어 두서가 없으니, 吝文의 말도 아니거니와 啓本의 투도 아니다. 吏讀俱錄 無頭無尾 旣非吝文之詞 又非啓本之體(宣祖實錄 37年, 1604)

ㄴ) 두서도 없이 吏讀를 섞은 글을 중국 衙門에 알려 통보에 실리게 한 것을 보면 이미 황제가 본 듯하니, 매우 미안합니다. 使無頭無尾 雜以吏讀之書 至報於中朝衙門 以載錄通報見之則似是已經皇上御覽 極爲未安(宣祖實錄 37年, 1604)

ㄷ) 신이 허균이 수정해 놓은 것을 가져다 보았는데 장계의 초안에서 단지 吏讀만 빼었으므로 문맥이 끊어져 연결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장계에 실린 일 이외에 기록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전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臣取筠所已點化者 見之則就狀啓草 只去吏讀 非但文字間 斷不成倫緖 狀啓之外 亦有許多可錄之事 而全然闕之(宣祖實錄 39年, 1606)

ㄹ) 이것은 判付이므로 吏讀를 썼는데, 승지가 살피지 못하여 비망기로 생각하고 예조에 전한 것이다. 此乃判付 故用吏讀 承旨不察 視爲 備忘 傳于禮曹矣(宣祖實錄 39年, 1606)

ㅁ) 그러나 그 등사지를 보면 곧 엄연한 하나의 公案이니 편지 속에 우연히 언급한 것이 어찌 이와 같은 채재가 있을 수 있으며, 또 어찌 전부 吏套를 써서 爰辭를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까? 而卽其謄紙 乃儼然一公案也 書中偶及者 豈有如許體段 又豈有全用吏套 作爲爰辭之理哉(肅宗實錄 26年, 1700)

(10ㄱ-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기서의 '吏讀'는 모두 형태부 표기에 사용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10ㄱ)에서 '이두가 함께 적혀 있다'는 것, 그리고 (10ㄴ)에서 '이두를 섞은 글'과 (10ㄷ)에서 '장계의 초안에서 이두를 빼었다'는 내용들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10ㄹ)에서도 '판부'와 '비망기'의 차이를 이두가 나타내는 것이므로 형태부 표기를 뜻한다고 본다. (10ㅁ)의 '吏套를 써서 爰辭를 만든다'는 말에서 '원사'가 문장이나 그 문체를 뜻하는 것이므로 그 원사를 만드는 '吏套'

즉 '吏讀'는 문장을 표기하는 표기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0)의 자료를 통해서 보면 '이두'는 형태부를 표기하기 위한 표기법과 문장을 표기하기 위한 표기법이란 개념으로 정립될 수 있다.

다음 자료는 조선 후기의 이른바 吏讀學習書에 나오는 史料들이다. 다양한 명칭에 비해 표기 대상과 관련하여 크게 주목할 내용이 없으므로 간단히 자료를 제시한다. 吏讀란 명칭으로 소개된 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15]

11. ㄱ) 세상에 전하는 우리의 이두는 곧 신라 홍유후 설총이 만든 것인바, 그러나 이제 여기 수록하는 것은 역시 후대인이 증보한 것이다. 世傳我東吏讀 卽新羅弘儒侯薛聰所著 而今此所錄亦多後人增補者(고금석림, 1789)
 ㄴ) 이두는 홍유후(弘儒侯)가 만든 것이다. 자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 상고할 수 없지만 모아보면 백여 조 가량 된다. 吏讀本文弘儒侯所製字句幾許不可攷要之爲百餘條(이두편람, 1829)
 ㄷ) 이두 방언 약간 자를 붙였다. 附吏讀方言若干字(어록변증설, 1840년 전후)

(11ㄱ)에서 '이두'는 '설총이 지은 것'이란 점에서 보면 표기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여기 실은 것'은 '후대 사람이 증보한 것'이란 내용으로 보면, '이두'는 문장이 아닌 형태부 표기에 사용되는 것이

15) 吏讀와 吏頭란 명칭을 보이는 자료로 다음이 더 보인다.
(ㄱ) 新羅聰儒侯薛公聰 以方言解九經又作吏讀(어록변증설, 1840년 전후), 羅麗吏讀(고금석림, 1789), 吏讀便覽이두편람, 1829)
(ㄴ) 吏頭彙編(유서필지 부록, 18세기 후반)
(ㄷ) 或云此是印字異 乃是俚語 更詳之此 不用於吏讀 恐當移載於篇末 (이두편람, 1829)

'이두'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표기법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용되는 형태부에 대한 관심이 더 크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1ㄴ)의 '吏讀本文'은 문장을 대상으로 한 표기법을 뜻하는 것이거나 문서 양식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반해 '字句'나 '百餘條'란 구절을 생각하면 형태부를 대상으로 한 표기로 해석할 수 있다. (11ㄷ)의 '若干字'란 표현은 형태부 표기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16] (11)의 기록에서 표기법을 뜻하던 이두가 후대로 오면서 형태부 표기로 의미가 국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두'란 용어는 대부분의 文獻資料에서 표기법의 개념으로 사용되었고 이두의 표기 대상은 원칙적으로 문장이었다. 그러던 것이 후대로 오면서 조금씩 형태부를 표기 대상으로 보게 되고 따라서 그 결과를 '이두'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硏究史로 본 吏讀의 개념과 성격

이 章에서는 개화기 이후 여러 학자들이 '吏讀'란 용어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16)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사료와 명칭을 더 볼 수 있다.
(ㄱ) 大抵 吏吐臣告君賤告貴 則皆加白字又用敎是ㅅ語 是字爲字隨勢改換爲好 又或做合兩項吏吐成一語脉亦無妨 行用吏吐幾盡入於上項 …(吏文襍例, 18세기 후반)
(ㄴ) 大抵 吏吐臣告君賤告貴 則皆加白字又用敎是等語 是字爲字隨勢改換爲好 又或做合兩行項吏吐成一語脉亦無妨 行用吏吐列於上其餘罕用者錄于左(儒胥必知 吏頭彙編, 18세기 후반)
(ㄷ) 薛聰 … 以方言解九經義訓導後生 又俚語製吏札 行於官府(이두편람, 1829)
(ㄹ) 薛聰 … 以俚語製吏札 行於官府公簿(신증동국여지승람)
(ㅁ) 吏文(이문, 이문대사, 전율통보, 이두잡례, 주해어록총람)
(ㅂ) 里讀(재물보)

'이두'의 개념에 접근한다. 하나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두를 표기의 원리로 보는지 아니면 표기의 대상(결과물)로 보는지에 따라 구분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두'란 용어가 포괄하는 범위와 관련된 논의를 검토한다.

먼저, '이두'를 형태부 표기에 사용된 것으로 본 견해는 다음과 같다.

岡倉由三郎(1893)는 '吏道는 胥吏가 사용하는 語尾'라 하여 문장이 아닌 형태부의 표기로 吏讀를 규정하였다.[17] 小倉進平(1929: 282)에서는 '吏札'이라고도 하는 '吏讀'를 '吏文의 보조어' 즉 '서리가 사용하는 어미'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향찰'은 '향가와 고유명사의 차자표기, 이두표기'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이에 따르면 '이두'는 형태부 표기에 해당한다.

방종현(1948: 9-13)은 '이두'가 한문의 토와 다른 점이 있지만 그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하면서 『대명률직해』의 형태부를 예로 제시하였다. 이로 보면 '이두'를 형태부의 표기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리고 안병희(1987: 8-9)에서는 종래 말하는 중국과의 외교문서에 나타나는 문체의 글인 吏文과 달리 국내문서의 독특한 문체의 글인 吏文이 있음을 말하고, 이런 吏文에 "곧 吐(또는 讀)를, 한자를 차용하여 표기한 것"이 吏讀라고 이해했다. 그리하여 吏讀와 吏讀文을 구별하였으니 전자는 형태부 표기에 해당하고 후자는 문장 표기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이런 견해는 "吏文은 한자어구와 이두를 포함한 문체 전부를 가리키나, 吏讀는 차자로 표기된 고유어로서 吏文의 문맥을 밝혀주는 어구를 가리킨다."(안병희1987: 24)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18] 그리고 안병희(2001ㄱ: 9)에서는 "관청에서 사용하는 이문 곧 법령이나

17) 이두와 관련한 서양인과 일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北鄕照夫(2002: 4-10)를 참조할 수 있다.

18) 안병희(1987: 24)의 'II. 이문대사'는 '안병희(1983), 이두문헌 이문대사에 대하여, 동방학지 38.'의 논문을 전재한 것이다.

공사 문서에 쓰이는 독특한 문체로 된 글"의 토를 '吏讀'라고 하고 그런 글의 문서를 吏書, 吏道라 하며 짧막한 글을 吏札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俚文은 '국어를 적은 글 즉, 방언문자'라는 것이다.

이승재(1989: 1)은 吏讀와 吏讀文을 구별하고 있다. 즉 "漢字의 訓과 音을 빌려서 우리 말 문장을 기록한 것으로는 이두문, 향찰문 그리고 구결문이 있다."고 하여 '이두문'이란 용어를 쓰고 이것이 문장을 표기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반면에 吏讀는 "이두문에 쓰인 우리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서 吏讀는 형태부를 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두 표기에 사용되는 문자를 '이두자'라고 규정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다음으로, '이두'는 문장 표기에 사용된 것이란 견해를 보자.

이기문(1974: 103)은 吏讀를 '한문도 국문도 아닌 그 문장 전체'라고 설명함으로써 이두는 문장을 표기한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박성종(1996: 11-14)에서는 이희승(1955: 22)의 견해를 따라 吏讀를 광의와 협의의 이두로 나누었다. 그런 다음 이기문(1974: 103)의 "그 문장 전체가 吏讀"라는 견해와 같이 吏讀를 정의하였다. 그리고 吏讀와 吏讀文을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다고 했다. 이렇게 보면 吏讀는 문장 표기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그 뒤에 '이두어, 이두토, 이두자'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이두'를 표기법의 개념이 아닌 형태부나 문장 표기의 개념으로 본 견해는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의 견해는 '이두'를 표기법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이숭녕(1955: 65)에서는 신라의 표기법 체계를 분류하면서 '이두문'은 '일반 문장을 표기'한 것에 해당하고, '향가'는 가요나 시를 표기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표기법 체계의 하나로 '이두'를 파악한 것이 특징적이다. 홍순탁(1974: 1)에는 향찰과 이두를 같은 체계상에 두면서도 '향찰표기법'에 대해 '이두표기법'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두'를 '표기법'으로 정의한 것으로 보인다.

홍기문(1957: 5)은 '이두'를 '한자를 이용하여 조선어를 기사하는 문자 체계'로 정의한 후 부연하여 "조선어의 문법 구조에 따라 개편된 한문의 한 문체"라 했다.[19] 그리고 홍기문(1957: 11-13)에서는 '조선어를 기사' 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만들거나 변경한 글자를 '이두자'라 이름하였고,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成語 즉 한자의 결합을 '이두어'라 하였으며, 한자로 기사된 조선어적 토를 '이두토'라 하였다. 류렬(1983: 13)은 '이두는 조선말을 적어 놓은 독특한 조선글의 하나'라 하고 '특수한 유형의 글'이라 하였으니 홍기문(1957)의 견해와 비슷하다. 이런 견해를 이은 것으로 보이는 오희복(1999: 25)에서는 '우리말의 어순체계와 다른 한문의 어순을 고쳐 우리말의 문법적 요구에 맞게 문장을 꾸며나가는 과정에서 이두가 생겨났다'고 하면서 吏讀를 '문자로서의 한자의 뜻과 음을 이용하여 우리말을 기록하는 독특한 서사 방식'이라 정의했다. 즉 吏讀를 "하나의 글말체계"로 본 것이다.[20] '문자 체계, 문체' 그리고 '서사 방식, 글말체계'는 표기법으로 해석하여도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中村完(1976: 21-44)는 조선 말기에 胥吏 스스로가 문서 범례들을 모아 吏讀 학습서를 만들 때 儒자를 붙여 『儒胥必知』라는 이름을 짓고 吏吐라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한 사실로 보아 '吏讀의 사용계급인 胥吏가 吏讀를 문체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때의 '문체'는 표기법 또는 문서 양식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종학(1995: 12)은 吏讀를 일종의 차자 표기법으로 보았다. 다시 말하면 문장 표기나 형태부 표기나와 같은 표기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표기 체계 또는 표기법으로 본 것이 된다.

19) 吏讀를 한문의 한 문체라고 하였으나 홍기문(1957: 24)에는 이와 다소 다른 서술을 하고 있다. 즉, "리두는 한문과 구별되는 한 개의 독특한 서사어의 체계다."라고 하여 한문의 한 문체가 아닌 듯한 서술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정통 한문과 구별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편이 좋을 듯하다.

20) 오희복(1999: 33)에서는 이두의 구성요소로 '이두음, 이두자, 이두어휘, 이두토, 이두어순'을 들고 있다.

한편, '이두'를 '표기법'과 그 결과물(즉 문장이나 형태부)이라는 두 개념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

이희승(1955: 22)은 吏讀를 광의의 이두와 협의의 이두로 나누었다. 광의의 이두는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법의 총칭'으로, 협의의 이두는 '이문의 보조사'로 나눈 것이다. 전자의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법'은 곧 표기법을 뜻하는 것이 된다. 협의의 이두는 곧 형태부를 표기 대상으로 잡은 것이 된다. 이기문(1972: 48≈1998: 61)의 "'吏讀'란 분명히 이 표기법과 吏胥의 관련을 보여 주고 있는데"라는 구절을 세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두를 사용하는) 胥吏와 (이러한 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표기법과의 관련을 보여 주는 것이 '吏讀'라고 해석되는데 그렇다면 '이두'란 표기법과 그것으로 표기된 대상(문장 또는 형태부) 둘 다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이기문(1998: 61ff)은 '이두는 한문이 우리나라 식으로 고쳐진 것으로, 단어 배열이 국어 문장 구조를 따르고 체언의 격이나 용언의 어미를 표기한 것'이란 설명이나 "조금 더 발달한 이두의 모습", "본격적인 이두", "명실상부한 이두의 성립" 등의 기술에서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남풍현(1986: 11-12)[21]에서는 이희승(1955: 22)의 광의와 협의의 두 개념을 수용하였다. 협의의 이두는 '이두문에 쓰인 우리말'을 가리키는데 남풍현(1986)에서는 협의의 이두로 그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니 '이두문에 쓰인 우리말'이란 바로 형태부를 표기한 것이 될 것이다. 광의의 이두는 '협의의 이두와 향찰, 구결, 고유명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표기법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남풍현(2006)에서는 '파격적인 한문'을 '초기적인 이두문, 변체 한문'이라 한 후, 이두를 '문체'로 파악하였다.

배대온(1997: 20)에는 吏讀를 "의국체에 필요한 문법소를 삽입하여 보다 안정된 한국어적인 표현이 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고 하였으니

21) 남풍현(2002)에 전재된 것을 이용하기로 한다. 면수도 이를 따른다.

이로 보면 이두는 형태부를 표기한 것으로 파악한 듯하다. 논의를 거쳐 배대온(1997: 22)에서도 "일부 實辭를 포함한 문법소에 해당하는 말을 한자의 音, 訓, 釋을 이용해 轉寫한 것을 吏讀라 하고, 吏讀가 섞여 있는 문장을 吏讀文이라 하겠다."고 함으로써, 이두는 형태부 표기를 위한 장치이고 이두를 이용한 문장을 이두문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두문'이란 용어를 사용한 데 이어서 '이두는 단순히 토라고만 볼 수 없고 오히려 문장 혹은 문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 하였다. 여기서는 '이두'를 토는 물론이고 문장까지 아우른 개념을 지나 문체의 개념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결국 "한자의 音, 訓, 釋을 이용하여 우리말을 轉寫한 일부 實辭와 助詞, 語尾 등 虛辭에 해당되는 표기를 吏讀라 하고 擬國體에 吏讀가 첨가된 일종의 문을 吏讀文이라 하는 것이 올바른 개념 정립이라 여겨진다."고 하였다. 그와 함께 '吏讀의 여러 명칭은 吏讀를 문체, 문장으로 인식한 類(吏書, 吏札, 俚文, 吏文)와 다른 하나는 토라는 개념으로 인식한 類(吏讀, 吏道, 吏吐, 吏頭, 吏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吏讀'는 형태부를 표기한 것이란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

'이두'란 용어를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 해석하는 견해가 있는데 김영욱(2011: 7)이 그것이다. '한자에 대응하는 경우 차용 문자의 뜻으로, 한문에 대응하는 경우 문장의 의미로 쓰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향찰에 대해 향찰문이라고 하지 않듯이 이두에 대해 이두문이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런 경우, '이두'는 문자, 형태부, 문장은 물론 한 차원 더 높은 표기법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정광(2006)에서는 중국 원나라의 吏文이 고려에 전해지면서 한국 고유의 표현이 첨가되었는데 이것이 吏讀라 주장하고 이 용어는 고려 후기 이후부터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吏讀'는 "漢吏文의 '吏牘'에 해당하는 술어로 이두문을 표기하는 것 자체를 가르친다."고 하여 이두를 표기법이라 하였다.[22]

이상 논의된 것을 정리하면, '이두'는 '표기법'이란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었고 문장이나 형태부 표기란 견해도 소수 있었다.

다음으로 '이두'가 포괄하는 범위와 관련하여 吏讀, 鄕札, 口訣을 논한 諸家의 견해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첫째, 吏讀와 鄕札을 거의 같은 개념으로 파악하는 견해를 보자. 먼저 '향찰'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한 논의는 아래와 같다.

小倉進平(1929: 286)는 이두란 명칭이 나오기까지는 鄕札이란 명칭을 사용했을 것이고 이때는 한자차자표기와 이두표기를 포함한 개념으로 향찰이란 명칭이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따라서 이 모두를 포괄하는 용어로 '鄕札'이라 부르는 게 온당하다고 했다. '鄕札'은 이두, 구결, 향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표기법에 해당하고 '吏讀'는 형태부 표기를 뜻하는 것이 된다.

다음으로 '이두'를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한 논의는 아래와 같다.

1937년에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吏讀集成』의 부록에는 '吏讀文例'가 들어 있다. 여기에는 吏讀는 물론 鄕歌까지 그 문례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로 보면 이두와 향찰을 같은 개념으로 파악하고 이를 '이두'로 부른 것이다.

홍기문(1957: 29)은 吏讀와 吏札의 관계를 논하고 있다. 이두와 이찰은 본래 같은 뜻의 말이지만 여러 형태를 가진 이두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형태를 이두란 이름으로 부른다고 한 후, '이두를 가지고 여러 형태를 포괄한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동시에, 다시 이찰을 가지고 그 중의 한 형태만을 가리키는 좁은 의미로 사용하려 한다.'고 하였다. 이

22) 정광(2006: 62)에서는 '이두'와 관련된 다른 용어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즉, '吏頭'는 한이문의 '吏道'에 해당하는 술어로 吏文을 학습하는 것, '吏吐'는 이두문에 삽입되는 문법요소(토), '吏套'는 이문류의 문체, '吏札'은 이두문에 쓰이는 한자 借字, '吏書'는 이두로 쓴 문서(글월)들이라 하였다.

렇게 보면 상위의 '吏讀' 아래 하위의 '鄕札, 口訣, 吏札'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 셋은 어떻게 다를까. 둘 다 이두적 어순을 가지는 鄕札과 吏札의 차이는 후자가 한자 본위 어휘를 사용하고 이두토를 사용하는 데 비해 전자는 한자 표기 어휘를 사용하고 구두어에 가까운 토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결국 鄕札은 향가와 같은 것을 기사하기 위해서 관청용 서사어인 리찰을 가지고 구두어에 더 가깝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한다." 고 주장하였다.[23] 따라서 吏讀는 '문장을 대상으로 하는 차자표기 체계'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홍기문(1957: 57-78)에서는 '초기이두, 이찰, 향찰, 구결'을 모두 이두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홍기문(1957)의 견해는 안병희(2001)에서도 보인다. 안병희(2001ㄱ: 13)에서는 '鄕札'은 鄕札, 吏讀, 口訣을 총괄하는 차자표기의 문자체계라고 한 후, 안병희(2001ㄱ: 14-15)에서 鄕札, 吏讀, 口訣의 용어를 재검토하였다. 鄕札은 "향가 표기의 글뿐 아니라 실용 문서의 글과 한문의 구결을 표기한 글도 가리킨다. 후대의 俚文과 같이 국어를 표기하는 모든 글을 가리키는 것이다."고 하였고 吏讀는 "공사문서와 법조문에 사용되는 국어 표기의 글로 제한"한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 口訣은 "한문의 구두에 들어가는 국어의 문법 형태인 토"라고 하여 형태부 표기로 보았다. 하지만 이어서 앞의 吏讀는 吏札이라고 하고 鄕札, 吏札, 口訣을 포괄하는 명칭으로 吏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안병희(2001ㄴ: 36-39)에

23) 홍기문(1957: 14-18)은 구두어[口語]와 서사어[文語]의 불일치의 정도에 따라 鄕札, 口訣을 나누었다. 즉, 구두어와 서사어 간의 불일치를 어느 정도 축소하려고 시도한 독송법이 '향찰식 독송법'인데 "鄕札이 리두의 여러 형태 중 바로 이 독송법에 상응한 형태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향찰식 독송법으로부터 토만을 떼다가 그것이 해당한 매 구절에 붙이여 읽는 독송법'을 '구결식 독송법'이라 하고 "구결이 리두의 여러 형태 중 바로 이 독송법에 상응한 형태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런 주장에 의하면 이두의 하위에 鄕札과 口訣을 둔 것이 되는데, 실제로 이두란 "한문을 독송하는 데 따라서 기사해 놓은 그 것이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다.

서는 '이두'를 1단계 이두와 2단계 이두로 대별하고 있다. 1단계 이두란 국어의 어순에 따라 문장이 구성되며 助字가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데 대개 8세기 중엽 이전의 자료가 여기 해당한다. 2단계 이두란 1단계 이두에 假借의 助字가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데 대개 8세기 중엽 이후의 자료가 여기 해당한다. 그러면서 2단계 이두는 향찰과 구결을 포괄하는 것을 규정하였다.

홍순탁(1974: 1)은 이두는 향찰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아 이 둘을 같은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단지 그 차이는 전자가 어절 단위의 표기법이라면 후자는 글을 위주로 한 표기법이라는 것이다.

남풍현(1986=2002: 13)에는 '이두'와 '향찰'을 엄격하게 구별 지을 특징을 찾기 힘들다고 하면서 순수 국어 문장 표기를 지향하는 것이 '향찰'이고 한문적인 성격을 지향하는 경향을 띤 것이 '이두문'이라 하였다. 한편 '구결'과 '고유명사표기'를 함께 논하면서 이 넷은 표기법상의 근본원리가 같으므로 하나로 묶어 '차자표기법'이라 한다고 하였다. 이 논의를 따르면 이두, 향찰, 구결, 고유명사표기는 모두 표기법이라는 차원에서 검토될 것이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남풍현(2002: 13)에서는 吏讀와 鄕札이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를 구별할 특징을 찾기 어렵다고 하였다. 즉 크게 보면 吏讀와 鄕札은 한 궤도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승재(1989: 1-2)은 "漢字의 訓과 音을 빌려서 우리 말 문장을 기록한 것으로는 이두문, 향찰문 그리고 구결문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 차이를 밝히기는 쉽지 않고 또 그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어서 '이두문'은 실용문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둘과 다르다는 기술을 하고 있다.

박성종(1996: 10-11)에서는 '국어의 語順讀'이란 점에서 이두와 구결을 동일하게 본 후, "이두를 위와 같이 정의할 때 향가를 표기한 문자체계인 鄕札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없어지게 된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鄕札, 鄕語'라는 용어가 이 둘을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 것과 관

련된다고 생각한다." 고 하여 이두와 향찰도 같은 개념으로 보았다.

'이두'란 용어에 대한 김영욱(2011: 7)의 융통성 있는 이해는 이두, 향찰, 구결로 세분하던 기존의 견해에서 이를 통합하려는 관점으로 이어진다. 김영욱(2011: 8)에서는 '이두의 범주는 매우 넓다'고 하면서 '좁은 의미에서 이두, 구결, 향찰이란 용어와 고유명사 표기법을 분리하여 설명할 수도 있으나 넓은 의미에서는 이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두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이두'는 '향찰, 구결, 협의의 이두'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대개 이해하였다. '이두'와 '협의의 이두'를 구별하기 위하여 '이찰'이란 용어를 사용하자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4. 結言

國語史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借字表記法'이란 용어를 숱하게 접하였다. 한자를 차용한 표기법이란 뜻인데 여기에는 고유명사 표기와 이두, 향찰, 구결이 있다는 분류를 큰 부닥침 없이 받아들인 듯하다. 그러나 이 방면의 연구 업적이 축적되어 가면서 이러한 표기 방식들이 과연 별개의 것인가 하는 의문에 봉착하게 되었고, 많은 연구에서 이러한 표기 방식을 하나로 볼 개연성을 밝히기도 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이두의 개념이 무엇이고 그 성격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다룬 내용은 다음 세 가지였다.

첫째, '이두'란 용어 자체의 개념 정립에 다소 혼란이 있는 듯하니, 이 용어의 표기 대상이 어휘부인가 형태부인가 아니면 문장인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용어는 표기된 결과를 말하는가 아니면 표기 원리나 표기법을 가리키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셋째, '이두'와 '향찰', '구결'이 가지는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吏讀'와 관련된 명칭이 나타난 문헌자료를 표기 대상의 관점에서 검토해 보면, 문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형태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吏讀'(鄕札, 吏書 포함)는 문장을 표기 대상으로 하는 데에서 차츰 형태부를 표기 대상으로 하는 뜻으로 변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후대 학자들이 이두의 개념에 혼란을 일으키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한다.

연구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吏讀'를 언어 단위(문장 또는 형태부)와 관련된 개념과 표기법과 관련된 개념으로 나눌 수 있는데 후자 쪽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대부분이었다. 史料에서 야기된 이두에 대한 개념 혼란으로 인해 후대 학자들이 이두를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거나 언어 단위의 표기물로 해석하는 등의 견해를 보인 것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또 吏讀, 鄕札, 口訣의 관계를 보면 거의 대부분 학자가 吏讀와 鄕札(口訣까지도)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吏讀'는 한자를 이용하여 우리 국어를 표기하는 표기법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표기법을 이용하여 국어의 문장을 표기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그리고 이두, 향찰, 구결도 조그만 차이는 발견되지만 큰 틀에서 동일한 표기법으로 보아도 무방할 거서이다. 이렇게 보면 이두, 향찰, 구결을 하나로 묶어서 나타낼 명칭이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 홍기문(1957)과 안병희(2001ㄱ)의 제안처럼 '이두'를 상위의 개념에 두고 그 하위에 '향찰, 이찰, 구결'을 두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吏讀'를 '국어를 표기하기 위하여 한자를 한국 고유의 방식으로 빌려 사용하는 표기법'이라 할 것이고, 앞의 논의에서 제시된 '이두문'은 '吏讀로 표기된 문장'이 될 것이며 '이두자'는 '吏讀에 사용된 고유한 (용법의) 한자'가 될 것이며, '이두어'는 '吏讀로 표기된 어휘', '이두토'는 '吏讀로 표기된 형태부' 등이 될 것이다. '이두문'은 한문에 대응하는 용어이고 '이두자'는 한자에 대응하는 용어가 되는 것이다.

參考文獻

강전섭(1963), 「이두의 신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岡倉由三郎(1893), 吏道, 諺文考, 『東洋學藝雜誌』, 143-144.

김문웅(1986), 『十五世紀 諺解書의 口訣硏究』, 형설출판사.

김영만(1980), 「儒胥必知의 吏讀 硏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욱(2011), 삼국시대 이두와 연구방법, 제41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별지.

金澤庄三郎(1918), 吏讀의 硏究, 『朝鮮彙報』 4, 朝鮮總督府, 71-99.

남풍현(1975), 한자 차용 표기법의 발달, 『국문학논집』 7·8, 단국대학 국문학과, 3-47.

남풍현(1981), 『차자표기법 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남풍현(1986), 이두·향찰표기법의 원리와 실제, 『국어생활』 6, 국어연구소, (남풍현(2002)에 재수록), 11-29.

남풍현(1990), 이두·구결,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594-604.

남풍현(2001), 설총과 차자표기법, 『새국어생활』 11-3, 국립국어연구원, 21-36.

남풍현(2002), 『吏讀硏究』, 태학사.

남풍현(2006), 上古時代에 있어서 借字表記法의 發達, 『구결연구』 16, 구결학회, 5-25.

도수희(1975), 이두사 연구, 『논문집』 2-6,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431-1461.

류렬(1983), 『세나라시기의 리두에 대한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박성종(1996), 「朝鮮初期 吏讀 資料와 그 國語學的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성종(2006), 이두연구 시기별로 본 고문서의 활용, 『영남학』 10, 영남문화연구원, 263-301.

방종현(1948), 『훈민정음통사』, 일성당서점.

배대온(1997), 『이두용언의 활용어미연구』, 형설출판사.

北鄕照夫(2002), 「이두자료의 경어법에 관한 통시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종학(1991), 「吏讀의 文法形態 表記에 관한 歷史的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종학(1995), 『吏讀의 歷史的 硏究』, 영남대학교출판부.
小倉進平(1929), 『鄕歌及び吏讀の硏究』, 京城帝國大學.
안병희(1977), 『中世國語口訣의 硏究』, 一志社.
안병희(1987), 『이문과 이문대사』, 탑출판사.
안병희(1988), 최세진의 『吏文諸書輯覽』에 대하여, 『주시경학보』 1, 주시경학회, 49-68.
안병희(2001ㄱ), 설총과 국어, 『새국어생활』 11-3, 국립국어연구원, 5-20.
안병희(2001ㄴ), 文字史에서 본 설총의 위치, 『한국문화와 역사 인물 탐구: 원효·설총·일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91-113.
양주동(1942), 『古歌硏究』, 박문서관.
오희복(1999), 『리두』,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이기문(1972), 『개정판 국어사개설』, 탑출판사.
이기문(1974), 양잠경험촬요 해제, 『서지학』 6, 한국서지학회.
이기문(1998), 『신정판 국어사개설』, 태학사.
이숭녕(1955), 신라시대의 표기법체계에 관한 시론, 『서울대학교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2, 서울대학교, 62-166.
이승재(1989), 「고려시대의 이두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용(2008), 고대 및 중세 이두 연구의 회고와 전망, 『구결연구』 21, 구결학회, 139-167.
이철수(1989), 『養蠶經驗撮要의 吏讀硏究』, 인하대학교출판부.
이희승(1955), 『국어학개설』, 민중서관.
장세경(2001), 『이두자료 읽기 사전』, 한양대학교출판부.
장지영 외(1983), 『이두사전』, 이화문화사.
정광(2006), 吏文과 漢吏文, 『구결연구』 16, 구결학회, 27-69.
정재영(1998), 대한제국시기의 서양인의 이두 연구, 『한국문화』 22, 한국문화연구소, 51-84.
中村完(1976), 史的名辭 '吏讀'의 槪念과 그 意識에 대하여, 『조선학보』 78, 조선학회, 21-44.
한상인(1993), 「大明律直解 吏讀의 語學的 硏究」,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홍기문(1957), 『리두연구』, 과학원출판사.
홍순탁(1974), 『吏讀硏究』, 광문출판사.

[712-749] 경북 경산시 대동 214-1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E-mail: jhsuh@yu.ac.kr
접수일자: 2010.07.05
심사일자: 2010.07.26
게재결정: 2010.08.10

The Concept and Character of Idu(吏讀)

Suh, Jong-ha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define the concept and character of Idu by examining and analyzing the research chronicles and historical data related with the concept of Idu.

The review of historical data allows us to find the fact that the term, Idu, means 'orthography' in most of historical data and it refers to the notation of 형태부 in historical materials in the latter half of the Choseon Dynasty.

From the analysis of research chronicles, it is agreed that Idu is also interpreted as 'orthography' in most cases and Idu, Hyanchal and Gugyeol can be grouped into one concept.

Accordingly, it would be better to actively accept the claim that Idu should be placed on a super ordinate concept and Hyangchal, Ichal and Gugyeol should be below it. In case that Idu is identified as a target of notation, it is possible to take using the term like 'Idu-mun'(이두문), 'Idu-eo'(이두어), 'Idu-tho'(이두토), 'Idu-ja'(이두자) into consideration.

Key Words: Idu, Hyangchal, Kugyul, Ichal, Target of Notation, Principle of notation, Orthography,